서울특별시 사회안전약자 등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764

2024년 5월 3일
행 정 자 치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김원태 의원 외 13명

나. 발 의 일 : 2024년 4월 3일

다. 회 부 일 : 2024년 4월 8일

라. 상 정 일 : 제32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24년 4월 29일 상정·의결(수정안 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원태 의원)

가. 제안이유

○ 서울시민이 범죄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범죄피해자, 범죄피해 우려자, 사회안전약자 등에게 범죄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안심물품 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서울시를 구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사회안전약자”, “안심물품”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사회안전약자 등을 범죄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 안심물품 지원사업 계획 수립의 근거를 규정함(안 제5조)

○ 안심물품 지원 대상 및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안 제6조)

○ 이 조례 시행 전에 지급된 안심물품도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것으로 보는 경과조치를 규정함(부칙 안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범죄피해자 보호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입법예고(2024.4.12. ~ 4.16.) 결과: 의견 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가. 입법취지 및 필요성 검토

○ 본 제정안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서울특별시를 만들기 위해 범죄에 취약한 사회적 안전 약자 등에 대하여 범죄예방 안심물품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 제정을 통하여 사회안전약자 등의 범죄피해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범죄예방 및 시민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 조례제정의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의 책무, 사업계획의 수립, 안심물품 지원사업 대상, 협력관계 구축, 비밀준수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제정안의 조문체계 및 주요내용 〉

조 문 체 계	주 요 내 용
제1조(목적)	- 범죄에 취약한 사회적 안전 약자 등에 대해 안심물품 등을 지원함으로써 범죄피해를 최소화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서울시를 구축하고자 함
제2조(정의)	- “범죄피해자”, “범죄피해 우려자”, “사회안전약자”, “안심물품”을 정의함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안심물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름
제4조(시장의 책무)	- 시장은 서울시 사회안전약자 등을 범죄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안심물품을 지원하는 등 범죄로부터 안전한 시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
제5조(사업계획의 수립)	- 시장은 안심물품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을 수립·시행
제6조(안심물품 지원사업 대상 등)	- 시장은 시민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심물품을 지원할 수 있음(제1항) - 안심물품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시에 주소 및 거소를 두거나 시에 소재한 직장 또는 학교에 소속된 사람으로 함(제2항) - 안심물품 지원 사업의 구체적인 지원 내용, 기준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별도로 정함(제3항)
제7조(협력관계 구축)	- 시장은 원활한 안심물품 지원을 위하여 중앙정부, 서울특별시경찰청, 서울특별시교육청,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제1항)

	-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정보교류·협력 등의 업무협약 체결 규정(제2항)
제8조(비밀준수)	- 안심물품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도록 규정함
부칙	- 공포일부터 시행(제1항) - 이 조례 시행 전에 지급된 안심물품도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것으로 보는 경과조치를 규정함(제2항)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찰법"이라 함) 제2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는바,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함)의 주민들, 특히, 범죄에 취약한 사회적 안전 약자(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등에 범죄예방 안심물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하겠음.

○ 2022년 서울시의 전체범죄 발생건수를 살펴보면, 약 28만건(279,507건)으로 전국범죄 발생건수(143만 4,888건)의 19.5%가 서울시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경기도(25.8%, 364,534건) 다음으로 높고, 각 지역별 인구 규모를 고려한 발생비로 살펴보면, 2022년 전체범죄 발생비가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3,849.1건)이고, 서울시(2,964.5건)가 네 번째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서울은 개인화, 익명화 등 도시적 특성으로 범죄의 취약성이 특히 높은 곳으로,[1]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전체범죄의 발생건수를 보면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범죄가 감소하였지만, 2022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로 인해 전년 대비 전체범죄 발생건수가 증가하였고, 5대 강력범죄에서도 강간·강제추행('21년 4,911건 → '22년 5,816건), 절도('21년

1) 신상영·조권중, "서울의 범죄발생 특성과 안심도시 추진방안",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 161, 서울연구원, 2014년 2월, 3면 참조.

33,531건 → ’22년 37,579건), 폭력(’21년 41,757건 → ’22년 46,783건)은 발생건수가 증가했으며, 범죄발생도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였고, 전년에는 무차별적인 흉기 난동 사건(서울 신림역과 경기도 성남 서현역 등)이 잇따라 발생하는 등, 일반 시민들의 범죄에 대한 불안은 증가하고 있는바,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물품 지원사업의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지역별 전체범죄 발생건수 및 구성비 추이(2018년~2022년) 〉

(단위: 건, %)

지역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발생건수	구성비	발생건수	구성비	발생건수	구성비	발생건수	구성비	발생건수	구성비
서울	308,997	20.0	309,269	19.7	296,178	19.2	257,969	18.7	279,507	19.5
부산	110,628	7.2	113,138	7.2	113,652	7.4	100,439	7.3	105,057	7.3
대구	72,341	4.7	75,797	4.8	72,373	4.7	67,915	4.9	66,786	4.7
인천	86,391	5.6	90,608	5.8	88,143	5.7	76,584	5.5	82,397	5.7
광주	43,569	2.8	44,274	2.8	43,517	2.8	39,392	2.9	38,900	2.7
대전	45,527	3.0	45,168	2.9	44,623	2.9	39,982	2.9	43,736	3.0
울산	32,764	2.1	32,780	2.1	31,381	2.0	29,085	2.1	27,286	1.9
세종	-	-	6,111	0.4	6,276	0.4	5,937	0.4	6,575	0.5
경기	388,938	25.2	394,276	25.1	394,226	25.6	357,243	25.8	364,534	25.4
강원	45,233	2.9	46,096	2.9	44,571	2.9	39,593	2.9	41,715	2.9
충북	48,315	3.1	48,085	3.1	47,864	3.1	43,397	3.1	44,055	3.1
충남	68,577	4.4	62,666	4.0	61,612	4.0	54,223	3.9	59,196	4.1
전북	47,944	3.1	48,252	3.1	47,446	3.1	43,650	3.2	45,199	3.2
전남	50,993	3.3	52,698	3.4	51,519	3.3	48,380	3.5	48,062	3.3
경북	74,356	4.8	77,449	4.9	73,762	4.8	65,553	4.7	66,928	4.7
경남	90,267	5.9	96,212	6.1	97,998	6.4	87,879	6.4	88,852	6.2
제주	27,427	1.8	26,090	1.7	27,129	1.7	25,515	1.9	26,103	1.8
계	1,542,267	100.0	1,568,968	100.0	1,542,270	100.0	1,382,736	100.0	1,434,888	100.0

* 연도별 합계는 해양경찰청에서 입건한 사건을 제외한 값임.

※ 출처 : 경찰청, 『범죄통계』, 2023년, 22면 재인용.

(경찰청 https://www.police.go.kr - 정보공개 - 경찰청범죄통계, 2024년 4월 13일 최종방문)

〈 지역별 전체범죄의 발생비 추이(2018년~2022년) 〉

(단위: 건)

지역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서울	3,164.1	3,178.8	3,063.3	2,712.8	2,964.5
부산	3,214.6	3,314.1	3,350.6	2,997.8	3,166.5
대구	2,938.6	3,108.9	2,992.7	2,847.1	2,825.5
인천	2,923.9	3,064.2	2,995.2	2,597.5	2,776.8
광주	2,985.5	3,039.8	3,001.0	2,732.5	2,718.3
대전	3,055.6	3,062.4	3,048.3	2,753.1	3,024.5
울산	2,835.2	2,855.4	2,762.4	2,593.2	2,456.7
세종	-	1,794.3	1,763.8	1,596.4	1,714.1
경기	2,974.2	2,978.0	2,936.1	2,633.5	2,682.5
강원	2,931.4	2,990.3	2,888.9	2,573.5	2,714.9
충북	3,021.1	3,005.3	2,989.9	2,716.7	2,762.0
충남	2,810.1	2,950.8	2,904.8	2,558.6	2,788.3
전북	2,610.1	2,652.8	2,629.9	2,442.8	2,554.2
전남	2,708.1	2,820.0	2,782.5	2,639.7	2,644.1
경북	2,777.8	2,905.2	2,794.6	2,495.7	2,573.7
경남	2,675.4	2,861.3	2,993.9	2,651.6	2,708.5
제주	4,110.8	3,888.3	4,021.3	3,770.2	3,849.1

* 지역별 발생비 = (지역별 발생건수*100,000)/해당년도 지역별 주민등록 인구수

※ 출처 : 경찰청, 『범죄통계』, 2023년, 22면 재인용.

(경찰청 https://www.police.go.kr - 정보공개 - 경찰청범죄통계, 2024년 4월 13일 최종방문)

〈 최근 5년간 서울시 5대 범죄 발생현황(2018년~2022년) 〉

(단위: 건, %)

연도	살인		강도		강간·강제추행		절도		폭력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2022	104	98	117	112	5,816	5,344	37,579	20,205	46,783	39,338
2021	124	112	122	116	4,911	4,446	33,531	17,950	41,757	35,388
2020	141	126	138	132	5,763	5,458	38,293	19,705	48,344	41,127
2019	136	128	136	133	6,469	6,007	42,204	21,284	54,723	47,253
2018	143	139	143	151	6,412	6,046	39,175	19,762	56,075	48,389

※ 출처 :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https://data.seoul.go.kr/, 2024년 4월 13일 최종방문).

○ 또한,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2023년 10월 예비비 5억원을 “여성안심물품 지원” 사업으로 교제폭력·스토킹·성폭력 등 범죄피해자 및 범죄피해 우려자를 대상으로 휴대용 비상벨 및 안심 경보기 세트(안심물품 지키미(ME))를 배부하는 사업을 시행하여, 4월 2일 기준으로 총 7,792세트가 배부되었음.

〈 안심물품 지키미(ME) 신청건수 및 물품지급 현황 〉

○ 신청건수 : ‘24.4.2 기준 총 9,858건(현장 2,062 / 인터넷 7,796)

○ 지급현황 : **‘24.4.2 기준 총 7,792세트(현장 2,062 / 인터넷 5,730)**

※ 출처 : 행정자치위원회 요구번호 665번, 자치경찰위원회 2024년 4월 15일 제출자료 참조.

※ 다만,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시행하였던 “여성안심물품 지원” 사업은 지급대상을 ‘범죄피해자 및 피해우려자’에 한정하여 지급하였으나, **지난 1월 4일 지급대상 확대를 위해 여성가족정책실 1인가구담당관실로 사업이 이관**되었고, 2024년 자치경찰위원회가 “여성청소년 보호활동 및 지원(전환사업)”에서 ‘범죄예방 안심물품 지원’을 위해 편성한 예산 8억원은 이체되지 않고 재배정이나 타부서 사업(여성가족정책실)으로 사용될 예정임.

여성가족정책실은 서울 거주자 + 서울 생활권자(서울시 내 직장 재직·학교 재학 등)에게 2만개의 안심이 앱 연동 휴대용 SOS 안심벨(경보기 미지급)을 범죄피해자 등 안전에 취약한 시민에게 무료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음(여성가족정책실, “2024년 휴대용 안심벨(헬프미) 지원계획”, 1인가구담당관-3353, 2024.3. 참조).

안심물품 '지키미(ME)' 1만 세트 지급 안내

① **인터넷 신청접수 지급(50%)** : 서울시 누리집

- 12월 28일 낮 12시부터~ 31일 24시까지 ※ **2024년 1월 4일까지 연장**

※ 인터넷 접수 후 위험성 등을 판단해 2024년 1월 8일부터 순차 지급

② **현장 지급(50%)** : 서울시 경찰서 및 지구대·파출소에서 사건 또는 112신고 처리 중 필요 시 지급

- 12월 28일 오전 10시부터

※ 이외 범죄피해 우려 상담을 위해 경찰관서를 방문한 경우, 필요성 판단하여 지급

○ 보급대상 : **주민등록상 서울거주 시민 중 스토킹 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 피해자 및 피해 우려자**

○ 수령방법 : 주민등록증 등 신청자 신분확인, 선택한 경찰서와 파출소 방문 후 수령

○ 문의 : 다산콜센터 02-120

안심물품 지키미(ME) 지급 일정(인터넷 신청접수)

인터넷 신청자 접수 (12.28~1.4(연장))	→	위험성 등 판단 (~2024.1.4)	→	대상자 확정 (2024.1.5)	→	물품 지급 (2024.1.8~)
인터넷 신청/접수		서울시·경찰 합동심사		지급대상자 확정		순차적 지급

※ 출처 : 내 손안에 서울, 많이 기다리셨죠? 안심물품 '지키미' 28일부터 신청, 2023년 12월 27일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2009896?tr_code=snews, 2024년 2월 16일 방문)

여성가족정책실(1인가구담당관), "2024년 휴대용 안심벨(헬프미) 지원계획", 2024.3.14. 참조

□ 사업개요

- ㅇ (지원대상) **서울 거주자 + 서울 생활권자**(서울시 내 직장 재직·학교 재학 등)
- ㅇ (지원물품) **안심이 앱 연동 휴대용 SOS 안심벨** ※ 경보기 미지급
- ㅇ (지원물량) 20,000개
- ㅇ (소요예산) 800백만원(사무관리비)
  - 휴대용 안심벨 40,000원(포장,택배 포함) X 20,000개 = 800백만원

※ 출처 : 행정자치위원회 요구번호 665번, 여성가족정책실 2024년 4월 9일 제출자료 참조.

- 본 제정안은 현재 시범운영 중인 '안심물품 지키미' 사업 대상자를 범죄피해자 및 범죄피해 우려자에서 사회안전약자 뿐만 아니라 서울시 내 소재한 직장 또는 학교에 소속된 사람에게까지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법 적합성을 확보하고, 안심물품 지원사업을 통해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측면에서는 의미있다고 하겠음.

※ 대법원(2015.10.15. 선고 2015도11392) 판결은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 제4호가목 또는 나목에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의 행위 중 하나로 열거된 '법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에 해당하려면, 단순히 자체사업계획에 의하여 예산을 그 편성 목적 및 절차에 따라 지출하였다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 금품제공행위와 관련된 '자체사업계획과 예산'과는 **별도로 존재하는 법령 또는 조례에서 이를 직접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07.11.16. 선고 2007도7207 판결 참조)"라고 하고 있음.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 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 3. (생 략)

4. 직무상의 행위

가. (생 략)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 다만, 지난해 12월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실시한 「대시민 인식조사」를 살펴보면, 시민들은 시민 안전 강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범죄예방 시설(CCTV, 방범등 등) 확대(51.3%), 경찰인력 순찰강화(49.1%), 범죄취약지 환경개선사업(범죄예방디자인(CPTED) 사업 등)(28.1%) 등은 높은 응답을 하고 있으며, 치안물품(휴대용 안심벨 등)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7.5%로 시민이 원하는 사업과 본 제정안에서 규정하는 사업은 차이가 있어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Q5. 시민 안전을 위해 우선으로 해야 할 사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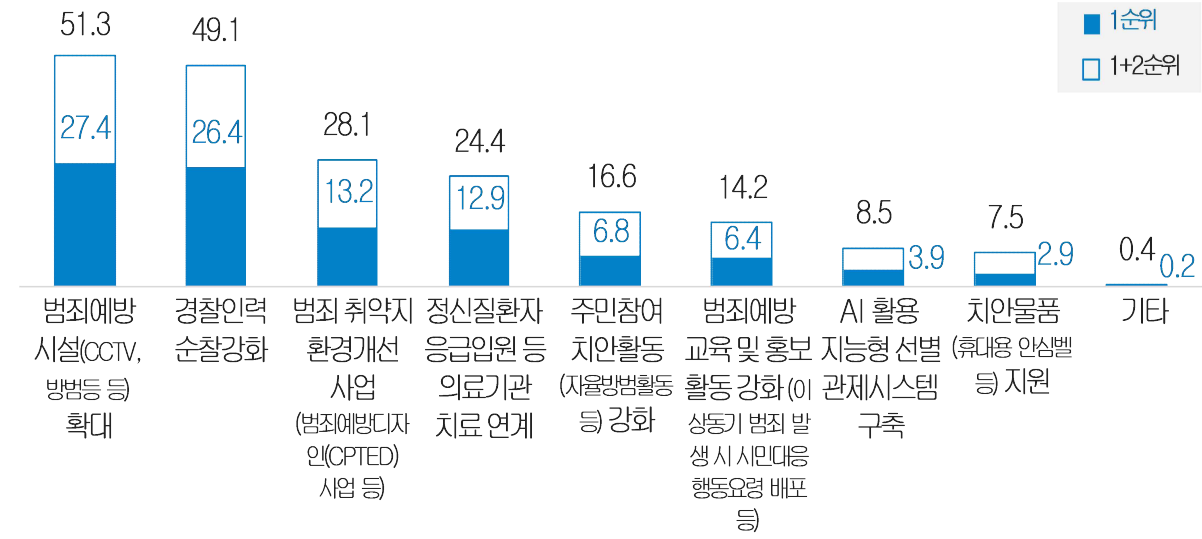

※ 출처 : 자치경찰위원회 보도자료, “서울시 자치경찰위, 「대시민 인식조사」 결과발표…시민체감 치안 정책 수립에 활용”, 2023년 12월 13일자 재인용.

○ 또한, 안심물품을 신청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것이 범죄예방에 얼마나 효과성이 있을지 여부, 안심물품을 신청순으로 지급될 경우, 오히려 안심물품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사회안적약자 등이 소외될 우려는 없는지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망되며,

- 범죄예방 안심물품 지원은 일회성에 그친다는 비판,[2] 방범벨, 방범창 등 안심물품 지원을 통해 치안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이 많은 수요를 보이고 있으나, 안심물품 지원사업이 범죄에 대한 안전·안심 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견해 등이 있는바,[3] 좀 더 실효적이고 근본적인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한 원인 파악과 그를 통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심도 있는 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2) 1코노미뉴스, “젊은 여성 1인 가구 느는데 … 성폭력·보복범죄 예방 제자리”, 2024.3.28. (http://www.1conom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562)
3) 조제성, “1인 가구 동향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 『형사·법무정책연구소식』 제162호,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22 summer, 30면 참조.

나. 세부내용 검토

1)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안 제1조 조례의 목적은 본 제정안이 범죄에 취약한 사회안전약자 등에 대해 안심물품 등을 지원함으로써 범죄피해를 최소화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서울시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임을 명시하고 있음.

※ 목적 규정은 그 법령의 해석지침이 되므로, 목적 규정은 간결하고 명확하면서도 입법의 목적과 취지를 포괄적으로 표현하여야 함(법제처, 『2022년 법령입안심사기준』, 2021년 12월, 54면 참조).

〈 서울특별시 사회안전약자 등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에 취약한 사회적 안전 약자 등에 대해 안심물품 등을 지원함으로써 범죄피해를 최소화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서울특별시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안 제2조 정의규정은 조례안에서 쓰이는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범죄피해자”, “범죄피해 우려자”, “사회안전약자”, “안심물품”을 정의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 사회안전약자 등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 우려자”란 현재 직접적인 범죄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피해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안전약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나. 생활양식이 범죄에 취약한 1인가구 거주자 및 1인점포 운영자
   다. 언어적·정보적 측면에서 취약한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 구성원
   라.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범죄피해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안심물품”이란 위급상황 시 자기방어력을 높이거나 외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물품 등을 말한다.

○ “범죄피해자”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제1항제1호에[4] 따른 범죄피해자 정의를 인용하여 규정하고 있고, “범죄피해 우려자”, “사회안전약자”, “안심물품”은 법령상 정의는 없으나, 본 제정안의 정의 규정을 통하여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의 의미와 다른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 용어에 대하여 조례에서 그 의미를 명확히 하여 조례의 해석상 의문점을 없애고, 법적 분쟁을 미리 예방함으로써 조례 해석과 적용상의 혼란을 예방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안 제2조제3호는 “사회안전약자”를 ①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② 생활양식이 범죄에 취약한 1인가구 거주자 및 1인점포 운영자, ③ 언어적·정보적 측면에서 취약한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 구성원, ④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 범죄피해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

- 가목의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은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 별표 1 생활안전, 교통, 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범위에서도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을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있는바, “사회안전약자”로 정의하는데, 적절하다고 하겠으며,

- 나목의 “생활양식이 범죄에 취약한 1인가구 거주자 및 1인점포 운영자”에서, 2022년 서울시 1인가구는 156만 4천가구(20.8%)로 경기도(163만 4천가구, 21.8%) 다음으로 높고, 29세(29.0%) 이하와 30대(27.6%) 1인가구는 서울시 비중이 가장 높으며, 40대(19.8%), 50대(15.8%), 60대(16.0%) 1인가구는 경기도(40대 25.6%, 50대 23.5%, 60대 21.0%)에 이어 두 번째로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서울시 1인점포 운영자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파악된 자료는 없으나 1인가구담당관에서 파악된 1인점포는 2023년 51만 6천명임.

---

4)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 2022년 1인가구의 지역별 분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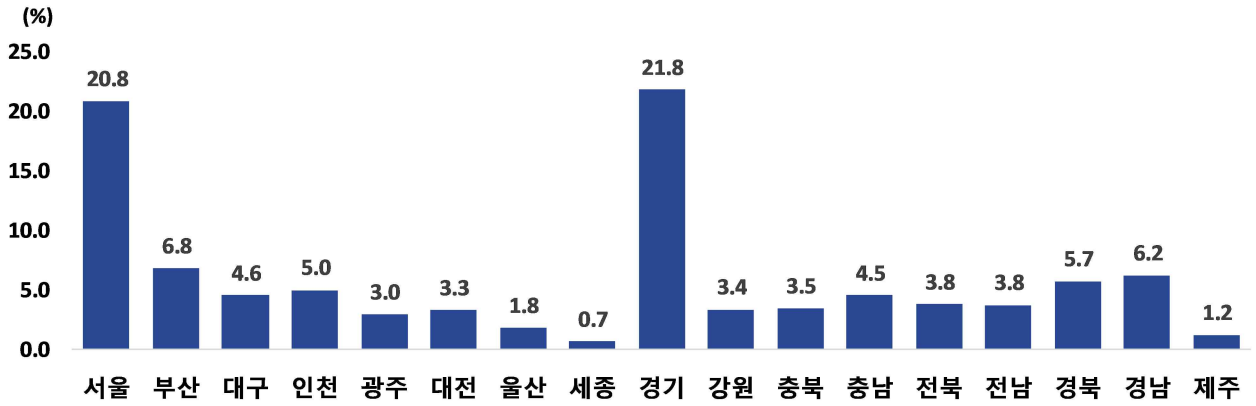

※ 출처 : 통계청, 『2023 통계로 보는 1인가구』, 2023.12.12., 10면 재인용.

〈 2022년 연령대별 1인가구 지역별 분포 〉

(단위: 천 가구, %)

	전체 가구[1]	구성비	1인가구	구성비	연령대별 1인가구 지역별 분포					
					29세 이하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전국	21,774	100.0	7,502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서울	**4,099**	**18.8**	**1,564**	**20.8**	**29.0**	**27.6**	**19.8**	**15.8**	**16.0**	**15.3**
부산	1,448	6.6	512	6.8	6.7	5.7	5.9	6.4	8.0	7.9
대구	1,011	4.6	342	4.6	4.2	3.9	4.2	4.9	5.1	5.0
인천	1,213	5.6	376	5.0	4.1	5.2	5.6	5.6	5.4	4.5
광주	623	2.9	221	3.0	3.3	3.0	3.2	3.0	2.7	2.6
대전	646	3.0	249	3.3	5.1	3.3	3.0	2.9	2.8	2.5
울산	454	2.1	137	1.8	1.4	1.8	2.1	2.2	2.1	1.6
세종	154	0.7	51	0.7	1.0	0.9	0.8	0.6	0.4	0.3
경기	**5,407**	**24.8**	**1,634**	**21.8**	**19.6**	**24.9**	**25.6**	**23.5**	**21.0**	**17.7**
강원	685	3.1	254	3.4	3.0	2.2	2.8	3.8	4.2	4.3
충북	705	3.2	261	3.5	3.4	3.0	3.2	3.7	3.7	3.8
충남	931	4.3	341	4.5	4.3	4.0	4.4	4.6	4.6	5.3
전북	778	3.6	285	3.8	3.3	2.6	3.3	3.9	4.1	5.5
전남	785	3.6	283	3.8	2.1	2.2	3.2	4.1	4.3	6.6
경북	1,166	5.4	431	5.7	4.5	4.0	5.1	6.0	6.6	8.2
경남	1,393	6.4	469	6.2	4.0	4.6	6.3	7.3	7.6	8.0
제주	276	1.3	92	1.2	0.9	1.1	1.6	1.7	1.3	1.1

주: 1) 일반가구

※ 출처 : 통계청, 『2023 통계로 보는 1인가구』, 2023.12.12., 10면 재인용.

〈 서울시 1인점포 현황 〉

(단위 : 천명)

시도별	종사상지위별	2021년	2022년	2023년
서울특별시	계	5,055	5,113	5,174
	비임금근로자	905	919	888
	자영업자	819	835	815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253	275	299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566**	**560**	**516**
	-무급가족종사자	86	84	74
	임금근로자	4,150	4,195	4,286
	-상용근로자	2,996	3,087	3,267
	-임시근로자	917	897	844
	-일용근로자	238	210	175

※ 출처 :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행정구역(시도)/종사장지위별 취업자

※ 행정자치위원회 요구번호 665번, 여성가족정책실 2024년 4월 9일 제출자료 참조.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2022년 연구결과에 따르면, 1인가구 중에서도 서울시 여성 1인가구가 밀집한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업적인 성격이 강하고, 다세대주택, 오피스텔과 같은 기타주택의 비율이 많으며, 이러한 밀집지역은 그 외 지역에 비해 데이트폭력, 성폭력, 스토킹, 주거침입 등 모든 유형의 범죄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5]

- 최근에 경기도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다방을 운영하는 1인점포 여성들의 살인사건이 발생하는[6] 등 1인가구 거주자와 1인점포 운영자의 범죄예방을 위한 안심물품 지원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으나, 모든 1인가구 거주자와 1인점포 운영자가 범죄가 취약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바, 포괄적으로 지원 대상을 규정하는 방안보다 대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대상자의 여건과 상황에 따라 지원물품을 세분화·구체화하여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

5) 장미혜 외 5인, 『여성 1인가구의 안전 현황과 정책 대응 방안(Ⅰ): 범죄와 주거위험을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22, 2022년 12월, 121면 참조.

6) 연합뉴스, "고양양주서 잇단 살인사건…경찰, 지문으로 동일범 소행 확인", 2024년 1월 5일자 참조.

- 또한, 안 제2조제3호나목중 “생활양식”이란 사회나 집단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생활에 대한 인식이나 생활하는 방식을 말하고,[7] “생활환경”은 생활하고 있는 주위의 자연적 조건이나 사회적 상황[8]으로 “생활양식이 범죄에 취약한”이 아니라 “생활환경이 범죄에 취약한”으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서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취사·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단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1조제9호에서 1인가구에 대한 범죄예방 및 생활안전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는바, 본 제정안에서 1인가구 범죄예방 안심물품 지원을 위하여 “사회안전약자” 정의에서 다시 “1인가구”를 중복해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 심도있는 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취사·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제11조(지원사업) 시장은 1인가구의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9. 1인가구에 대한 범죄예방 및 생활안전 지원사업

2)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및 제4조)

○ 안 제3조는 본 제정안과 다른 조례 간의 적용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안심물품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 조례를 따르도록 하고 있음.

---

7)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https://stdict.korean.go.kr/), 2024년 4월 13일 최종방문.
8)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https://stdict.korean.go.kr/), 2024년 4월 13일 최종방문.

〈 서울특별시 사회안전약자 등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심물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사회안전약자 등을 범죄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안심물품을 지원하는 등 범죄로부터 안전한 시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안 제4조는 시장에게 책무(사회안전약자 등을 범죄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안심물품을 지원하는 등 범죄로부터 안전한 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를 부여하고 있는바, 이는 시장으로 하여금 사회안전약자 등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책무·책임 또는 정책수립의무 등에 관한 규정은 자치법규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시장 등이 수행해야 할 책무 등을 정한 것으로, 이러한 규정은 시장 등이 담당해야 할 책무를 자치법규에서 명확히 정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입법목적을 좀 더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두는 것임(법제처,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2022.8., 99면 참조).

○ 다만,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르면, 시장 등의 책무 규정은 원칙적으로 그 자치법규의 총칙 부분에 두며, 일반적으로 목적, 정의 규정 다음에 두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규정보다는 앞에 두어야 한다고 하고 있으므로,[9] 본 제정안에서 안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4조 시장의 책무 규정 순으로 되어 있는 조문의 순서를 안 제3조를 시장의 책무, 안 제4조를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제 정 안	수 정 의 견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심물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사회안전약자 등을 범죄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안심물품을 지원하는

9) 법제처,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2022.8., 99면 참조.

	등 범죄로부터 안전한 시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사회안전약자 등을 범죄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안심물품을 지원하는 등 범죄로부터 안전한 시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심물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안심물품 지원 사업계획의 수립(안 제5조)

○ 안 제5조는 사회안전약자 등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안심물품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본사업(안심물품 지원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서울특별시 사회안전약자 등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

제5조(사업계획의 수립) 시장은 사회안전약자 등을 범죄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안심물품 지원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지원사업의 전략 및 목표, 추진 방향
2. 지원사업의 추진계획 및 전년도 추진 실적
3. 지원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평가 방안
4.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소요재원의 조달방안
5. 지원사업의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원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다만, 사업계획 수립시 서울시 전체와 분야별 구체적인 범죄 발생 건수와 증감상황, 다수 피해 발생지역 등 체계적인 범죄통계 분석을 통해 서울시에서 일어나는 범죄에 대한 특성을 구체화하고, 범죄 예방 및 지원 정책을 수립 후 범죄예방을 위한 안심물품 지원사업 추진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경찰법」 제4조제1항제2호,「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별표,「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서는 "자치경찰사무"로 ① 지역 주민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시설 설치·운영, ② 지역 주민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진단, ③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의 실종 예방·대응 활동, ④ 그 밖에 관련 법령에 경찰의 사무로 규정된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및 가정폭력·학교폭력·성폭력 등 예방업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서울시 전체와 분야별 범죄 발생 건수와 증감상황을 점검하여, 최근 증가하는 범죄에 대한 예방정책 마련 등이 필요하므로, 범죄통계 분석 등을 통한 서울시의 종합적인 범죄예방 정책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생활안전, 교통, 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등) ①「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과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생활안전, 교통, 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 및 범위(제2조 관련)

가.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

자치경찰사무	범위 기준	구체적 사항 및 범위
1)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의 운영	**가) 지역 주민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시설 설치·운영**	① 범죄취약지역 환경 개선 등 지역 범죄 예방환경 설계(CPTED) 사업 추진 ②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지원
	나) 지역 주민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진단	① 지역·건물의 범죄취약요소 현장진단 및 점검·관리 ② 범죄예방 강화구역 관리 등 범죄예방진단 전담 경찰관 운영
	다) 지역 주민 안전을 위한 순찰과 범죄예방활동 시행·관리	① 시기·장소별 범죄예방활동 시행·관리 ②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시행
2) 주민참여 방범활동의 지원 및 지도	가) 범죄예방을 위한 주민 참여 지역협의체 구성·운영	① 생활안전협의회, 자율방범대 등 범죄예방을 위한 주민 참여 지역협의체와의 협업 및 지원·지도
	나) 주민 참여형 범죄예방 활동 시행·관리	① 지역주민 대상 범죄예방 요령 등 홍보활동 ② 주민 참여형 범죄예방활동
3) 안전사고 및 재해·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구조지원	①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안전사고 및 재해·재난 발생 시 지역주민 안전확보를 위한 긴급구조지원

	나) 재해 발생 시 지역의 사회 질서 유지 및 교통관리 등	① 재해발생지역의 사회질서 유지 ② 재해발생지역의 교통관리 등
	다) 그 밖에 긴급구조지원 기관으로서의 긴급구조지원 활동 등	그 밖에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의 지역 내 긴급구조 지원 활동
4)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업무 및 가정·학교·성폭력 등의 예방	**가)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노인·장애인에 대한 보호활동**	①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예방활동 ②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사안대응 ③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피해자 보호기관 등 연계·지원 ④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관련 학대예방 전담 경찰관 운영
	나)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의 실종 예방·대응 활동	① 실종 사전예방활동 ② 실종·유괴 경보 체계 구축·운영 ③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 대상시설 지도·감독 ④ 유전자 채취 및 보호시설 등 일제수색 운영
	다) 아동 대상 범죄예방 및 아동안전 보호활동	① 아동안전지킴이 등 아동안전보호 인력운영 및 선발·배치·감독 ② 아동안전지킴이집 등 아동안전 보호기관 관리 및 운영·교육·홍보 ③ 그 밖에 아동 대상 범죄예방 및 아동안전 보호활동
	라)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보호 활동	① 청소년 비행 사전방지 활동 ② 청소년 선도·보호활동 및 청소년 참여제도 운영
	마) 가정폭력범죄 예방과 피해자 등 보호 활동	①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②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 ③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④ 가정폭력 관련 학대예방 전담 경찰관 운영
	바) 학교폭력의 근절·예방과 가해학생 선도 및 피해학생 보호 활동	① 학교폭력 범죄근절 및 예방활동 ② 가해학생 선도 및 피해학생 보호 ③ 학교폭력 예방 전담 경찰관 운영
	사) 성폭력 예방과 성폭력 피해자 등 보호 활동	① 성폭력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 ②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아) 그 밖에 관련 법령에 경찰의 사무로 규정된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및 가정폭력·학교폭력·성폭력 등 예방 업무	그 밖에 관련 법령에 경찰의 사무로 규정된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및 가정폭력·학교폭력·성폭력 등 예방업무

5) 안심물품 지원사업 대상 등(안 제6조)

○ 안 제6조제1항은 시민들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안심물품 지원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사업의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어야 함에 따라 본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이며, 범죄예방보다는 범죄상황 발생시 주변 또는 경찰에 빠르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짐.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기부·보조의 제한) **③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대법원은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게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인지 여부는, 보조금 지출 대상의 성격, 실제 보고금이 지출될 사업의 내용, 사업이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 해당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갖는 일반적 인식 등 객관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고 있음(대법원 2013.5.23. 선고 2012추176 참조).

〈 **서울특별시 사회안전약자 등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

제6조(안심물품 지원사업 대상 등) ① 시장은 시민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심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범죄예방을 위한 안심물품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시에 주소 및 거소를 두거나 시에 소재한 직장 또는 학교에 소속된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우선 지급하여야 하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1. 범죄피해자
2. 범죄피해 우려자
3. 피고발인으로부터 보복 피해를 우려하는 고발인
4. 사회안전약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내용, 기준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다만, 범죄의 발생은 예측할 수 없는바, 예측할 수 없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물품 지원사업은 매우 광범위하여 사업 내용도 모호해질 수 있으며, 사업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없거나, 전례답습적인 사업운영시 불필요한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안 제6조제2항은 안심물품 지원대상을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으로 한정하지 않고, ① 시에 주소 및 거소를 두거나 ② 시에 소재한 직장 또는 학교에 소속된 사람까지로 하여 지원 대상을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서울 지역을 생활권으로 하는 직장인과 학생까지 확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지방자치법」 제16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라고 하고 있음.

- **주소(住所)** : 「민법」 제18조제1항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라고 있음,
- **거소(居所)** : 생활의 중심이지만 밀접의 정도가 주소만큼은 못한 곳을 말함, 주소를 알 수 없을 때(「민법」 제19조), 국내에 주소가 없을 때(「민법」 제20조)에는 거소를 주소로 봄.

- 지방자치단체가 그 소관 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 그 소관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한도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할 구역의 주민이 아닌 자를 조례의 적용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바,[10] 본 개정조례안에서 서울 지역을 생활권으로 하는 직장인과 학생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다만, 서울시 주민등록인구는 963만 8,799명(내국인 938만 6,034명, 등록외국인 25만 2,765명, 2023년 12월 31일 기준),[11] 서울시 거소인구는 13만 8,885명(2022년 3월 2일 기준)이고,[12] 서울을 생활권으로 하는 사람은 1,097만 3천명이며(2024년 4월 11일 기준), 그 외 서울시 소재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수는 663만명, 서울시 소재 고등교육기관 재적학생수는 91만명 규모로,

- 예산의 범위내에서 한정적인 안심물품(2024년 지원물량은 2만대임)을 지원하는 사업임에도 지원 대상자 확대로, 오히려 지원이 꼭 필요한 서울시민 중 사회안전약자 등은 신청이 늦어 지원을 못 받게 될 우려는 없는지, 범죄피해자, 범죄피해 우려자, 사회안전약자 등을 단순히 나열하는 것은 아닌 안심물품 지원 우선순위를 정해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지원대상을 과도하게 확대했으나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은 소규모일 경우 보여주기식 사업으로 전락하거나, 시민의 수요를 단시간 내에 충족하기 위해 단기에 과도한 투자로 서울시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여지는 없는지 심도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10) 법제처는「지방자치법」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과 변경절차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에서는 그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은 그 지역적 관할과 인적 관할의 범위에서 미치는 것이 원칙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소관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그 소관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한도에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할 구역의 주민이 아닌 자를 조례의 적용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임(법제처, 안건번호 22-0237, 회신 2022.9.28.) 참조.

11)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주민등록인구통계(2023.12.31. 기준)”, 2024년 1월 자료 참고.

12) 서울 열린데이터광장-서울시 거소신고인수 현황 통계 (https://data.seoul.go.kr/dataList/10652/C/2/datasetView.do 2024년 4월 15일 방문)

* 서울 생활인구 추계 대상은 집계구 단위의 내국인 생활인구, 장기체류외국인 생활인구, 단기체류외국인 생활인구, 행정동 단위의 서울에서 생활하는 서울外 지역 인구(대도시권 생활인구)임.

** 생활인구 추계에 이용되는 데이터는 대중교통 이용통계, 주민등록인구통계, 사업체조사자료, 건물 DB 등 서울시가 보유한 빅데이터와 KT통신 빅데이터를 활용함.

※ 출처 : 서울 열린데이터광장-서울빅데이터-서울 생활인구
(https://data.seoul.go.kr/dataVisual/seoul/seoulLivingPopulation.do, 2024년 4월 15일 방문)

※ '생활인구'란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 2.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특정 지역을 방문하여 체류하는 사람으로서 체류 횟수가 월 1회 이상인 사람, 3. 외국인 중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을 말함(「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참조). **'생활인구'**는 기존의 주민등록상의 등록인구가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 인구감소지역의 활력을 제고시켜 **지방소멸 위기를 막으려는 새로운 인구관리의 개념**으로, **서울시는 인구감소지역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범죄예방을 위한 안심물품 지원사업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 적절한지** 대해서는 심도있는 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2022년 건강보험 적용인구 현황 〉

사업장수(개소)	가입자(명)	피부양자(명)	총 적용인구(명)
487,282	6,631,521	2,864,850	9,496,371

* 가입자는 사업장 근로자 3,638,602명,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 256,956명, 지역가입자 2,735,963명 합계임

※ 출처 : 서울 열린데이터광장, 『서울시 건강보험 적용인구 현황』, 자료갱신일 2023.10.25.
(https://data.seoul.go.kr/dataList/42/S/2/datasetView.do, 2024년 4월 15일 방문)

〈 2023년 서울소재 고등교육기관 재적학생 현황 〉

구 분		학교수	부설대학원	재적학생수(명)
학 부		67	-	764,018
대학원	대학원대학	21	-	5,502
대학원	부설대학원	-	385	142,412
대학원		21	385	147,914
전체	**소계**	**88**	**385**	**911,932**

* 학부 학교수는 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전공대학, 사내대학, 기능대학 등을 모두 합친 학교수이며, 대학부설 대학원은 고등교육기관 학교수에 포함되지 않음.
** 재적학생수는 재학생, 휴학생, 학사학위취득 유예생이 포함됨.

※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교육통계서비스-2023년 행정구역별 고등교육기관 개황
(https://kess.kedi.re.kr/, 2024년 4월 15일 방문)

○ 안 제6조제2항 단서에서 안심물품 지원 대상자 중에서 ① 범죄피해자, ② 범죄피해 우려자, ③ 피고발인으로부터 보복 피해를 우려하는 고발인, ④ 사회안전약자에게 안심물품을 우선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자치경찰위원회의 “제1차 지키미 사업관련 사용자 등 반응 종합 분석”을 살펴보면, 지키미 신청자는 여성이 91.1%, 그 중에서도 20대와 30대가 6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신청사유를 보면 범죄피해 우려자가 58.4%로 대부분이며, 실제 피해 및 사건 관련 경험이 있는

경우가 16.5%, 기타가 25.2%로 이유를 보면 노인·장애인 등 이동약자들이 예측할 수 없는 범죄피해를 대비하기 위해 신청하고 있다고 하고 있는바, 안심물품 지원에 있어서 범죄피해자, 범죄피해 우려자, 사회안전약자 등에게 우선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실제 안심물품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하겠음.

〈 지키미 신청자 성별·연령대 현황 〉

구분	성별		연령대					
	여성	남성	10대 이하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5,000	4,553	447	99	1,266	1,836	813	819	167
100.0%	**91.1%**	8.9%	2.0%	**25.3%**	**36.7%**	16.3%	16.4%	3.3%

〈 지키미 신청사유 〉

총계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 대상	사건 접수자	경찰 상담경험자	피해 우려자	기타
5,000	369	43	71	338	2,921	1,258
100.0%	7.4%	0.9%	1.4%	6.8%	**58.4%**	**25.2%**

※ 출처 : 행정자치위원회 요구번호 665번, 자치경찰위원회 2024년 4월 15일 제출자료 참조.

- 또한, 단서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은 경기도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안심물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이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도록 하여 더욱 많은 사람들이 안심물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의미있다고 하겠으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안심물품을 지원받았는지 여부 또는 중복수령에 대한 반환체계 구축 등 사업추진을 위한 필수적 운영체계가 단시일 내에 구축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경기도는 여성 1인가구 안심패키지 지원(창문잠금장치, 스마트 문열림센터, 현관문 안전걸이, 호신용 스프레이, 스마트홈 카메라 등)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경기도 1인가구 포털(https://www.gg.go.kr/)-여성1인가구안심패키지, 2024년 4월 15일 최종방문), 2024년 안전취약계층인 청년들에게 호신용품 보급한다고 하고 있음(경기도 보도자료, "경기도 1인가구, '아늑하고 안전한 연결망' 지원받는다", 2024년 2월 14일자 참조).

- 또한, 우선 지급자 중 '피고발인으로부터 보복 피해를 우려하는 고발인'은 '범죄피해 우려자'의 한 범주로도 볼 수 있는바, 별도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안 제6조제3항은 안심물품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구체적인 지원 내용,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령에 따라 의회의 의결이 요구되는 조례의 직접 규정 사항을 시장(시행규칙)에게 위임하는 것은 의회의 권한을 시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으로 규정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

6) 협력관계 구축(안 제7조)

○ 안 제7조는 안심물품 지원을 위하여 중앙정부, 서울시경찰청, 서울시교육청, 자치구,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더욱이 현재 계획중인 범죄예방을 위한 지원물품인 휴대용 안심벨(헬프미)은 신변의 위협을 느꼈을 때 누르면 5초 경과 후에는 보호자에게 문자가 전송되며, 자치구 CCTV 관제센터 즉시 대응 및 경찰출동 조치가 취해지는바, 자치구, 경찰과의 유기적인 협력관계 구축하여 운영해야만 범죄피해에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하므로, 사업의 효율적 수행 및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서울특별시 사회안전약자 등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

제7조(협력관계 구축) ① 시장은 원활한 안심물품 지원을 위하여 중앙정부, 서울특별시경찰청, 서울특별시교육청,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정보교류·협력 등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다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문구의 명확화를 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는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로 강행규정화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

제 정 안	수 정 의 견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원활한 안심물품 지원을 위하여 중앙정부, 서울특별시 경찰청, 서울특별시교육청,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정보교류·협력 등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원활한 안심물품 지원을 위하여 중앙정부, 서울특별시 경찰청, 서울특별시교육청,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①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정안과 같음 >

7) 부칙의 경과조치(부칙 안 제2조)

○ 부칙 안 제2조는 동 조례안이 제정되기 전에 지원된 안심물품도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것으로 보는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 사회안전약자 등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지급된 안심물품도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것으로 본다.

- 이는 부칙으로 소급입법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안심물품 지원규정은 주민에 대한 복지 증진의 일환으로 그 내용이 수익적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하겠으나,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은 단서에서 사업의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고 있음에도,

- 본 제정안 이전의 안심물품 지원은 조례에 근거없이 사업이 시행되었던 것으로, 이를 본 제정안에서 부칙의 경과조치를 통해 조례에 근거 없이 시행한 집행부의 사업까지 인정해 줄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소급입법'이란 새로운 법을 만들며 그 효력이 과거로 거슬러 적용되게 하는 것을 의미하며, 「대한민국헌법」 제13조에서 소급입법금지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침해적인 성격의 소급입법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이념으로 하는 법치국가의 원리에 위배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수익적인 소급입법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는 달리 입법의 목적, 수혜자의 상황, 국가예산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됨.

제 정 안	수 정 의 견
부 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지급된 안심물품도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것으로 본다.	< 삭 제 >

- 또한, "경과조치"는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된 자치법규에 의한 기득권 침해 방지 등의 정책적 필요에 따라 특정한 사안이나 사람에 대해 "구 자치법규"를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안심물품 지원에 관한 본 제정안은 이전에 이와 관련된 현행 조례가 없는바, 조문 제목으로 '경과조치'가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특례·적용례·경과조치 비교 〉

구분	특례	적용례	경과조치
필요성	구 자치법규와 신 자치법규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신 자치법규를 적용하는 대상과 시기가 불명확한 경우	구 자치법규를 적용하려는 경우
내용 및 효과	신 자치법규에 대한 예외 인정	신 자치법규의 적용대상 및 시기 명시	구 자치법규 적용
규정방식예시	제○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야 한다.	제○조의 개정규정은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출처 : 법제처,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2022년 8월, 310면 재인용.

다. 종합의견

○ 본 제정안은 범죄에 취약한 사회안전약자 등에 대하여 범죄예방 안심물품 지원 근거 규정을 통하여, 사회안전약자 등의 범죄피해를 최소화하고, 범죄예방 및 시민 안전 강화 등 안전한 서울시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의미있다고 하겠음.

- 다만, 안심물품 지원에 따라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지 여부, 안심물품의 효과성, 사업대상을 과도하게 폭넓게 규정(서울시민뿐만 아니라 서울을 생활권으로 하는 직장인 및 학생)함에 따라 안심물품이 신청순으로 지급될 경우, 오히려 절실히 지원이 필요한 사회안전약자 등이 소외될 우려, 서울시 재정부담에 미치는 영향, “사회안전약자”에서 다시 1인가구 규정이 필요한지 여부, 우선 지급대상자의 중복 규정 여부(‘피고발인으로부터 보복 피해를 우려하는 고발인’은 ‘범죄피해 우려자’에 포함) 및 부칙의 소급입법의 불가피성 유무 등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수 정 안 의 요 지

가. 수정이유

○ 제정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용어의 정확한 사용과 입법기술적으로 규정의 위치를 조정하고, 불필요한 경과조치를 삭제하기 위하여 수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안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와 안 제4조 시장의 책무 조문 순서는 시장의

책무가 먼저 규정되어야 함에 따라 조문의 위치를 조정함(안 제3조와 안 제4조).

○ 안 제6조제2항 중 제3호 “피고발인으로부터 보복 피해를 우려하는 고발인”은 제2호 “범죄피해 우려자”의 한 범위 내에 있어 제3호를 삭제함(안 제6조제2항제3호).

○ 부칙 안 제2조 경과조치는 소급입법금지 원칙에 반하여 보호해야만 하는 중대한 사회적 가치나, 인정하지 않으면 시민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이 없는바, 이를 삭제함(부칙 안 제2조).

8. 심 사 결 과 : 수정안 가결(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 사회안전약자 등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764

제안연월일 : 2024년 5월 3일
제 안 자 : 행정자치위원장

1. 수정이유

○ 제정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용어의 정확한 사용과 입법기술적으로 규정의 위치를 조정하고, 불필요한 경과조치를 삭제하기 위하여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와 안 제4조 시장의 책무 조문 순서는 시장의 책무가 먼저 규정되어야 함에 따라 조문의 위치를 조정함(안 제3조와 안 제4조).

○ 안 제6조제2항 중 제3호 “피고발인으로부터 보복 피해를 우려하는 고발인”은 제2호 “범죄피해 우려자”의 한 범위 내에 있어 제3호를 삭제함(안 제6조제2항제3호).

○ 부칙 안 제2조 경과조치는 소급입법금지 원칙에 반하여 보호해야만 하는 중대한 사회적 가치나, 인정하지 않으면 시민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이 없는바, 이를 삭제함(부칙 안 제2조).

서울특별시 사회안전약자 등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사회안전약자 등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3호나목 중 “생활양식이”를 “생활환경이”로 한다.

안 제3조를 제4조로 하며, 안 제4조를 제3조로 한다.

안 제6조제2항제3호는 삭제하고, 제4호를 제3호로 한다.

안 부칙 제1조, 제2조를 삭제하고,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사회안전약자 등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 수정 조문대비표 〉

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제정안과 같음)
1. “범죄피해자”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1. ~ 3. (제정안과 같음)
2. “범죄피해 우려자”란 현재 직접적인 범죄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피해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안전약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가. (제정안과 같음)
나. 생활양식이 범죄에 취약한 1인가구 거주자 및 1인점포 운영자	나. 생활환경이 범죄에_취약한 1인가구 거주자 및 1인점포 운영자
다. 언어적·정보적 측면에서 취약한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 구성원	다. (제정안과 같음)
라.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범죄피해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라. (제정안과 같음)
4. “안심물품”이란 위급상황 시 자기방어력을 높이거나 외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물품 등을 말한다.	4. (제정안과 같음)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심물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사회안전약자 등을 범죄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안심물품을 지원하는 등 범죄로부터 안전한 시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서울특별시(이하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심물품 지원사업

제 정 안	수 정 안
“시”라 한다) 사회안전약자 등을 범죄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안심물품을 지원하는 등 범죄로부터 안전한 시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안심물품 지원사업 대상 등) ① 시장은 시민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심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안심물품 지원사업 대상 등) ① (제정안과 같음)
② 범죄예방을 위한 안심물품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시에 주소 및 거소를 두거나 시에 소재한 직장 또는 학교에 소속된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우선 지급하여야 하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② (제정안과 같음)
1. 범죄피해자 2. 범죄피해 우려자	1. ~ 2. (제정안과 같음)
3. 피고발인으로부터 보복 피해를 우려하는 고발인	< 삭 제 >
4. 사회안전약자	3.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내용, 기준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제정안과 같음)
부 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지급된 안심물품도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것으로 본다.	< 삭 제 >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사회안전약자 등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에 취약한 사회적 안전 약자 등에 대해 안심물품 등을 지원함으로써 범죄피해를 최소화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서울특별시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 우려자”란 현재 직접적인 범죄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피해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안전약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나. 생활환경이 범죄에 취약한 1인가구 거주자 및 1인점포 운영자
   다. 언어적·정보적 측면에서 취약한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 구성원
   라.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범죄피해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안심물품”이란 위급상황 시 자기방어력을 높이거나 외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물품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사회안전약자 등을 범죄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안심물품을 지원하는 등 범죄로부터 안전한 시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심물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사업계획의 수립) 시장은 사회안전약자 등을 범죄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안심물품 지원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지원사업의 전략 및 목표, 추진 방향
2. 지원사업의 추진계획 및 전년도 추진 실적
3. 지원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평가 방안
4.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소요재원의 조달방안
5. 지원사업의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원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안심물품 지원사업 대상 등) ① 시장은 시민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심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범죄예방을 위한 안심물품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시에 주소 및 거소를 두거나 시에 소재한 직장 또는 학교에 소속된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우선 지급하여야 하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1. 범죄피해자
2. 범죄피해 우려자
3. 사회안전약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내용, 기준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7조(협력관계 구축) ① 시장은 원활한 안심물품 지원을 위하여 중앙정부, 서울특별시경찰청, 서울특별시교육청,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정보교류·협력 등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비밀준수) 이 조례에 따른 안심물품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